

##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

제정 2016. 9. 5.  
개정 2017. 3. 1.  
개정 2020. 4. 1.  
개정 2021.12.1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대학의 스쿨, 학과 및 전공에 관한 신설, 통·폐합,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규정은 대학 학칙 제4조에 규정된 스쿨(학과, 전공)에 적용한다.

**제4조(구조조정 원칙)** 구조조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 달성
2. 대학 특성화방향 일치성 및 미래발전 가능성
3.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
4.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추진에 대한 대응
5. 정부의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능동적 대응
6.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

**제5조(구조조정 기준)** ①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.

1. 신입생 충원율
2. 재학생 충원율
3. 취업률
4. 스쿨(학과, 전공) 운영상태 : 재학생충원율(교원업적평가기준), 산학지수, 입학지수, 만족도지수, 스쿨(학과, 전공) 미래전망(해당분야) 등

② 제①항의 제1호, 제2호, 제3호는 최근 5년의 자료를 활용하고, 산식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적용하며, 제4호의 재학생충원율, 산학지수, 입학지수, 만족도지수는 당해년도 교원업적평가 산정기준을 적용한다.

**제6조(스쿨(학과, 전공)의 폐지)** ① 매년 4월 1일자 신입생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% 미만인 스쿨(학과, 전공)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스쿨(학과, 전공)을 폐지할 수 있다.

② 편제정원 대비 등록금 납부인원이 60% 미만인 스쿨(학과, 전공)은 다음연도에 스쿨(학과, 전공)을 폐지할 수 있다.

③ 신설 스쿨(학과, 전공)의 경우 스쿨(학과, 전공)의 완성연도 이후 제①항과 제②항을 적용한다.

④ 제①항과 제②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총장은 제5조의 구조조정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쿨(학과, 전공)의 정원조정 및 통폐합 할 수 있다.

**제7조(구조조정 절차)** 제6조의 기준에 따른 스쿨(학과, 전공)의 폐지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에서 발의하여 구조조정 대상스쿨(학과, 전공)과의 협의,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하며, 폐지 및 통폐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지(모집중지)

가. 폐지된 스쿨(학과, 전공)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.

나. 폐지된 스쿨(학과, 전공)은 「학칙」의 부칙 「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」에 따라 스쿨(학과, 전공)을 유지·종료한다.

2. 통폐합

가. 스쿨(학과, 전공)의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스쿨(학과, 전공)이 통합할 수 있다.

단, 폐지기준에 따라 통폐합되는 경우 해당스쿨(학과, 전공)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.

나.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, 취업률 등 제5조(구조조정기준)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쿨(학과, 전공)을 통폐합할 수 있다.

**제8조(학생의 신분유지)** ① 폐지스쿨(학과, 전공) 소속의 학생은 입학 시의 스쿨(학과, 전공) 소속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기간은 「학칙」의 부칙 「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」에 따른다

② 통폐합된 스쿨(학과, 전공) 소속의 학생은 통폐합된 차년도부터 통폐합된 스쿨(학과, 전공) 소속이 된다.

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소속 학생이 원하는 경우 소속스쿨(학과, 전공)의 변경을 할 수 있다.

**제9조(스쿨(학과, 전공)의 폐지로 인한 교원의 신분 및 처우)** 스쿨(학과, 전공)의 폐지에 따른 소속 교원의 신분은 폐과(전공, 학과) 교원 인사관리 규정을 따른다.

**제10조 삭제**

**제11조 삭제**

**제12조 삭제**

**제13조 삭제**

**제14조 삭제**

**제15조 삭제**

**제16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 삭제